

「군포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



2021년 10월 13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58호

군포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군포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근로자의 작업 중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사 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미래기획부
임 안 자	직 성 명	미래기획부장 이 현 동
	직 성 명	안전감사팀장 이 영 남
	담당 성명 (전화번호)	박 병 진 (390-7646)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0조의2 <신설>	<p>제50조의2(근로자의 작업중지)</p> <p>① 공사 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